

공정한 계약문화, 벤처투자의 새로운 기준이 되다

창업자는 혁신과 도전에 전념하고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은
보호받을 수 있는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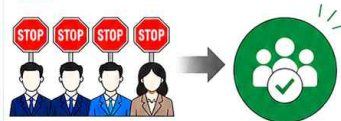
1 계약서 구조·유형 개편



32종 → 5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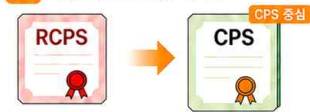
- 통합형 → SPA·SHA 분리
- 32종 복잡한 유형 → 5종 단순화
- ✓ 계약 목적별 권리·의무 명확화

2 라운드별 집합적 동의 방식 도입



- 투자자 전원 동의 중심
→ 라운드별 집합적 동의 방식 도입
- ✓ 의사결정 지연·거부권 남용 완화

3 상환권 조항 개선



- RCPS 관행적 활용 → CPS 중심 표준안 제시
- ✓ 회계상 부담 완화

4 전환권 리픽싱 개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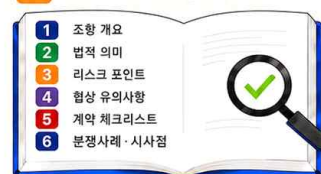
- 최저가 조정 방식 → 가중평균 방식
- ✓ 창업자 지분 희석 부담 완화

5 IPO·연대책임 정비



- IPO 성공 의무 우려 → 최선 노력 의무 중심
- ✓ 과도한 투자금 회수·뺏음선 남용 방지
- 고의·중과실 외 제3자 연대책임 제한
- ✓ 창업자·대표자 책임부담 완화

6 6단계 맞춤형 해설서



- 1 조항 개요
- 2 법적 의미
- 3 리스크 포인트
- 4 협상 유의사항
- 5 계약 체크리스트
- 6 분쟁사례·시사점

표준계약서 활용·확산 방안

홍보 확산



뉴스레터·유튜브·SNS 등
다양한 채널을 활용해
표준계약서 홍보

스타트업 상담 지원



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
상담인력 교육 및 벤처투자
분야 전문가 상담 지원

투자자 교육 연계



VC협회 교육과
한국벤처투자 리스크관리
워크숍에 개정 내용 반영